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FAX: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7.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